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19

서울 행정법원

제 3 부

판 결

2000. 5. 26. 판결선고	
2000. 5. 26. 원본영수	인

사 건 2000구221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변 론 종 결 2000. 5.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11. 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법시험 2차시험 불
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이 1999년도에 시행된 제4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
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해서 평균점수 미달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해서 행정법 과목이 4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1999. 11. 6. 원고들을 각 불합격처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4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위 처분은 사법시험령 제3조의 선발인원제한제도 및 제15조 제2항의 과락제도 규정에 의한 것인바, 사법시험령 제3조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는 사법시험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리 합격자 수를 정하고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의 논리력이나 법률지식이 변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 등수 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과목별로 일정점수 미만을 얻은 수험생들을 무조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따라서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정원제한 및 과락제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위헌무효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사법시험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장 실시한다.

제3조 (선발예정인원) ①선발예정인원은 매시험시행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그 수를 일정범위의 수로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때마다 합격의 하한점수 기타 선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득점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합격의 하한점수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판 단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검찰청법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판사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변호사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각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자격을 명시한 위 각 법률에 의하여 이미 제한되었다 할 것이고, 사법시험령은 위와 같이 사법시험 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19

격을 자격기준으로 정한 위 각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을 둔 것으로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 즉 소위 집행명령에 불과하여,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모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법시험령이 사법시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합격기준 등을 정하였다고 해도 그 내용이 위 각 법률을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무관하게 부당하고 자의적인 합격기준을 둔 것이 아닌 한 이에 의해서 새로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법시험령이 규정한 정원제한과 과락제도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의 집행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 아닌 한 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는 자격시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자격 기준을 일정 점수 이상의 득점으로 하든지 또는 일정 선발 인원 내에 드는 것에 의하든지 간에 이는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선택 문제로서 반드시 전자만이 옳고 후자의 방식은 그르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과락제도는 각 분야에서 고른 소양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써 과목별로 일정 득점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근소한 차로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시험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므로, 사법시험령에서 정한 선발인원의 제한이나 과락제도가 부당하고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법시험령의 모법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령에서 정한 정원제한 규정과 과락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불합격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26.

재판장 판사 김 수 형 _____

 판사 홍 성 준 _____

 판사 한 애 라 _____